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6.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5호로 2019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
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안 제3조 ~ 제6조)

다. 공공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 ~ 제10조)

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함을 규정함

마.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5. 2. ~ 5.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농어촌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 제2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6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3장은 공공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제13조에서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4장은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음.
- 본 조례안은 도농간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

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